

尖端技術時代를 맞는

特許行政의 課題



朴 弘 植

<特許廳 次長>

技術의 Know How

Know How와 特許

〈意 義〉

Know How란 한마디로 ‘技術秘訣’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Know How의 正確한 定義는 아직 確立되어 있지 않으나 大體的으로 產業界에 來對象이 되고 있는 Know How의 意味는 國際商業會議所(ICC)의 定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어떤 製品을 製造, 使用한다든가 또는 特定方法을 實施하기 爲한 有用한 技術的 知識, 經驗, ディータ 및 그 밖의 情報를 말하며, 이것을 理解함으로써 所定의 產業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는 것’

企業의 重要한 技術的無形資產으로서의 노우·하우의 價值에 대한 認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技術의 種類에 따라 노우·하우가 차지하는 重要性은 다르지마는 오늘날 노우·하우에 低觸되지 않는 技術移轉을 생각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最近까지만해도 노우·하우라고 하는 것은 特許를 받을 수 없는 些少한 考察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가르킨다고 하는 등의 思考方式이 있었지만 產業技術이 複雜多岐해지고 高度化된 오늘날에는 노우·하우는 特許와 함께 重要한 技術的資產으로 되어 있으며, 企業經營上의 戰略的

手段으로서 그 價值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라이센싱의 對象이 되는 提供技術中에는 特許性이 있는 發明이 노우·하우의 一部 또는 主要部로서 包含되고 있는 境遇도 있지만 特許性이 전혀 없는 技術的知識, 經驗, ディータ, 情報등의 有機的 結合일 境遇도 있다.

〈特許와 公開要件〉

特許에 依한 保護를 받기 위해서는 出願을 하는 것이 前提條件으로 되어 있으며, 出願公開라는가 出願公告에 依하여 內容이 公表되고 公開의 報償으로서 一定期間 獨占的인 權利가 國家로부터 附與받게 되어 있다. 特許에 있어서 公開의 程度는 完全하여야 한다. 우리 特許法은 特許廳에 提出하는 特許出願書에 發明의 名稱, 圖面, 請究範圍는 물론 發明의 詳細한 說明書를添附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發明의 詳細한 說明書’에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者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을 程度로 그 發明의 目的, 構成, 作用 및 效果를 記載하여야 한다.

美國 特許制度는 出願人の 誠實과 正直을 強하게 要請하고 있다.

이같은 要請은 出願手續에 있어서 出願人の 先行技術開始義務(Applicant must present prior art statement before USPTO)와 Best Mode 記載, 要件으로써 具體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Best Mode 要件을 充足한다면

첫째, 出願時點에 있어서 '發明者가 最善이라고 생각하는 實施例'를 完全하게 開始한다.

둘째, 또한 發明者自身의 發明에 關聯된 것이 아니라도 他의 樣相을 알고 있고, 그것이 Best Mode라고 發明者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記載할 것이 要求된다.

이같이 特許가 公開를 要求하고 있는데 대하여 노우·하우는 「秘決」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特許의 경우처럼 公表되지 않는다. 따라서 Know How에 대한 어떤 法的 保護를 한다해도 國家로부터 獨占的인 權利가 부여될 수는 없다. 他人이 獨自로 開發하고 實施 또는 公表하는 것을 妨害할 수는 없다.

〈特許나? Know How나?〉

一般的으로 發明 또는 技術을 特許로서 保護하든가, 노우·하우로서 企業機密로 해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大體적으로 技術의 種類, 內容, 性質 및 그들의 高度性, 達成의 難易度 등에 따라 決定되지만 企業의 戰略에 依해서도 左右된다. 코카 콜라의 경우 그 原液이 特許化되지 않고 있으며, 限定된 사람에 의한 極秘事項으로 取扱됨으로써 創業以來 몇 十年이 經過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他人은 一切 본말 수가 없는 狀態로 노우·하우로서의 價值을 保全하고 있는事實을 우리는 알 수 있다.

開發된 技術을 特許받지 않고 秘訣로 간직하고자 하는 境遇는 特許制度의 缺乏한 問題에서 오는 수도 있다. 特許를 받기 爲해서는 ①相當한 費用 ②結論을 얻을 때까지相當한 期間의 所要(2~3年) ③拒絕의 危險 ④公開等 冒險的인 旅行을 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러나 一般的인 傾向에서 볼것 같으면 오늘날 世界의 特許出願件數는 해마다 增加하고 있으며 巨額의 研究費와 努力으로서 얻은 技術開發을 特許化하는重要性을 否定할 만한 理由는 없다.

따라서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特許로서 保護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權利化를 圖謀하고 特許權을 包含한 關聯 노우·하우의 保護에 萬全을 期하는 것이 實際의이고도 賢明한 方策이라고 생각된다.

그 例로서 化學的 프로세스의 경우는 一般的으로 技術의 키포인트는 特許로써 눌러 놓고 技術을 뒷받침하는 프로세스 또는 엔지니어링등의

知識, 經驗, 페이터 등은 노우·하우로서 保全하는 對策을 取하고 있는 것은 重要한 事實인 것이다. 또한 組立產業分野에 있어서도 組立物에 대한 發明은 特許化되고 있지만 設計上의 知識이라든가 標準作業條件 등은 노우·하우로서 所重하게 간직되는 境遇가 많다.

NASA의 衛星發射機構라든가 日本國鐵의 新幹線시스템 등은 數百萬에 이르는 特許, 非特許의 技術 또는 部品의 組合이라고 하겠지만 그 自體가 巨大한 노우·하우를 形成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볼 때 現在의 產業技術은 龙大한 構成材料로 되어 있는 피라미트 같은 構造에 비유할 수가 있으며 特許는 그 頂點에 開花한 技術의 피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우·하우는 피라미트 全體의 방대한 基體를 構成하는 個個의 基礎材의 有機的인 結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法的 保護의 概況

최근 國際團體, 各國 民間團體, 實務者, 學者들에 의한 노우·하우의 法制化를 위한 각종 檢討主張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充分한 成果는 없는 것 같다. 實제로 內容의 公開가 없는 노우·하우를 어떻게 하면 特許制度와의 調和를 가지게 하면서 法的 保護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极히 어려운 問題라고 하겠으며, 이 問題의 解決을 위해서는 금후에 있어서도相當한 時日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現在와 같은 狀況下에 있어서는 우선 노우·하우의 所有者는 그 內容이 漏泄되지 않게끔 可能한 한 嚴重한 管理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資產을 保護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第3者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當事者끼리 契約을 맺고 相對方에게 秘密保持義務를 課함으로써 秘密性을 維持함과 同時に 契約의 目的以外의 流用을 禁止하는 등 用意周到한 契約을 하여 그 財產價值을 保護하는 것이 最高의 方法이라고 하겠다.

各國의 動向

日 本

法上 노우·하우權이라든가 노우·하우 保護

를 爲한 明示的規定은 없다. 따라서 既存法律體系에 依하여 短片의으로 保護하는 수밖에 없다.

民事的으로는 契約關係에 依해 保護하는 수밖에 없는 바, 契約關係가 있는 境遇一般的으로 損害賠償請求는 可能하지마는 停止請求權은 認定되지 않는다고하는 判例가 있다. 刑事的 救濟에 있어서는 Know How가 有體化되었을 때는 窃盜, 橫領等이, 그렇지 않은 境遇 背任罪等이 適用될 수 있다. 그러나 企業間競爭의 激化에 따라 產業스파이 등 企業秘密의 盜用行爲가 增加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現行刑法은 實情에 어긋나는 點이 많다고 하는 理由로 1974年 法制審議會는 “改正刑法草案”的 答申속에서 企業秘密漏示罪를 揿入하고, 1976年 法務省도 이 答申을 基礎로 企業秘密漏示罪를 包含한 刑法 全面改正에 着手했지만 결국 國會上程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채 아직도 論議의 中心點이 되고 있다.

特許法關係에 있어서는 이른바 冒認의 特許出願에 대해서는 拒絕理由(特第49條4號), 特許異議申請理由(特第55條), 無效理由(第123條第1項4號)로서 間接的으로 保護하고 있다.

美 國

美國에서의 노우·하우의 法的保護는 制定法에 의하지 않고 개개의 事件에서의 判例에 따라서 만들어진 判例法 즉, 커먼·로우에 의한다. 커먼·로우는 각주마다 獨立하고 있으며 각주에 裁判所는 노우·하우의 保護에 대해서도 獨立의 인 法을 形成하고 있다. 따라서 正確하게는 주마다 노우·하우의 保護의 方法은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우·하우 자체에 관한 法은 없기는 하지만 더 넓은 概念을 가진 trade secret에 관한 커먼·로우(便宜的으로 트레이드·시크리트法이라고 불리우고 있다)에 의하여 노우·하우는 保護되고 있다.

노우·하우를 包含한 트레이드·시크리트 保護의 法理로서는 財產權理論(property Theory)과 信賴關係理論(confidential relations theory) 등 두개의 主要理論이 存在하고 있으며, 美國에서의 大부분의 事件은 이 두개의 理論이 適用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適用되고 있는 信賴關係理論이라고 하는 것은 信賴關係에 있는 한쪽의當事者가 다른쪽當事者에 屬하고 있는 트레이드·

시크리트를 不當하게 第三者에 開示하였을 경우에는 當該트레이드·시크리트를 가지고 있는 当事者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理論이다.

信賴關係는 使用者와 從業員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雇用關係에 있어서 가장 많이 發生한다. 美國에서는 雇用關係가 맺어지기만 하면 이 信賴關係理論을 근거로 하여 特別히 明示的인 秘密保持義務가 約定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被雇用者は 雇用됨으로써 알고 있는 秘密의 情報를 누설한다든가, 盜用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暗默의 義務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트레이드·시크리트法에 의한 民事的 救濟는 停止命令, 損害賠償請求, 不當利得返還請求 등에 의하여 實施된다.

노우·하우의 不正使用 그밖의 노우·하우의 不當한 侵害로부터 所有者를 救濟하는 가장 有效하고도 適切한 手段은 停止命令이다. 이것이 認定되고 있는가의 여하에 따라 그 나라의 노우·하우 保護를 위한 法制의 内容을 判斷할 수가 있지만 美國의 裁判所는一般的으로 損害賠償請求가 法律上 充分한 救濟策이 되지 못한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停止命令을 認定한다. 그러한 意味에서 美國은 노우·하우 保護에 관해서는 現在 世界에서 가장 進歩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秘密性이란 노우·하우 소유자만이 알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限定된範圍內에서 秘密이 保全되고 있다는 것이 必要하다. 따라서 不注意 등으로 스스로 雜誌 등에 公表를 한 技術情報 등은 이미 노우·하우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제아무리 둑터운 美國의 트레이드·시크리트法下에서라고 하더라도 保護는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우·하우 소유자는 노우·하우의 秘密을 지키기 위한 充分한 注意를 하고 必要한 조치(第三者에 開示할 경우의 秘密保持契約 등)를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刑事的 救濟로서 아칸소,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크 등 20여개의 州에 있어서는 制定法에 의한 刑法에 의하여 노우·하우의 窃取 등의 行爲가 處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法律은 노우·하우 그 自體는 對象이 되지 아니하고 노우·

하우가 具體化된 圖面 등의 有形物의 窃取行爲 등이 犯罪로 취급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英 國

美國法制의 본보기가 된 英國의 法制는 노우 하우 保護의 分野에 있어서도 美國各州에서 實施되고 있는 트레이드·시크릿法의 모범이 되고 있다.

英國에서는 일찍부터 默示의 契約 또는 信賴義務違反의 法理에 따라 노우·하우의 不正開示, 窃取 등에 대해서는 民事的 救濟로서 停止命令, 損害賠償請求, 不當利得返還請求 등을 認定하고 있으며, 刑事救濟로서는 從業員秘密漏泄罪, 從業員買收罪 등이 適用되고 있다.

西 獨

西獨에 서의 노우·하우의 法的保護는 不正競爭防止法(1909年)에 의한다.

同法 第17條부터 第20條까지에 있어서는 營業上 및 製造上의 秘密의 漏泄 및 不正使用은 禁止되고 있으며 違反行爲는 刑事的으로는 最高 5年以下の 禁錮에 處하기로 되어 있으며 民事的으로는 發生한 損害를 賠償하는 義務가 있음을 規定하고 있다.

그밖의 나라

아래 여러나라들은 西獨의 不正競爭防止法과 類似한 法에 의한다.

- 오스트리아
- 노르웨이
- 덴마크
- 스웨덴
- 프랑스, 벨지움, 이탈리아, 네덜란드

民事的으로는 民法典속의 不法行爲의 一般規定이 適用되어, 刑事的으로는 刑法典에 의한 處罰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充分한 구제는 기대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우리나라도 Know How 保護를 爲한 法上特別規定은 없다. 또한 日本, 美國等一部 先進國에서 볼 수 있는 判例의 發展도 없는듯 하다.

우리도 日本과 마찬가지로 民刑事의 一般的인 法體系에 依한 間接의 保護와 特許法에 依해서 他人이 盜用하여 特許를 받을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 不正競爭防止法은 商品의 表識이나

出處의 混同을 일으키게 하거나 虛偽事實로 他人의 營業上의 利益을 侵害하는 것을 防止하고 있으므로 Know How는 保護對象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政策課題

概 觀

尖端技術의 發展에 따라 知的所有權 保護가 問題되는 分野를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C. S. W〉

Computer Software는 特許性이 認定되는 것은 特許法에 依한 保護를 받을 수 있으나 一般的인 保護는 著作權法을 補完하거나 獨立된 特別法을 制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C. S. W의 普及을 為해 獨占的인 保護는 時期尚早란 意見이 있으나 우리의 自然資源 및 人的資源의 與件上有利한 產業임으로 保護하는 立法措置가 可及的 빨리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技術 Know How〉

技術 Know How는 公開되지 않은 것으로서 公開를前提로 하는 特許와의 關係에 있어서 調和있는 措置가 講究되어야 한다.

不正競爭의 次元에서 Know How가 侵害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歐羅巴의 多數國들은 不正競爭防止法에 包含시켜 이를 保護하는 例는 있으나 아직도 特別法이나 法上 特別 保護措置를 取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그 保護의 必要性은 減次 增大되어 가고 있으며, 國際的으로도 이를 檢討하고 있다.

우리의 境遇도 強力한 保護措置는 特許法과의 關係上 問題가 있으므로 現行法 體系에서 保護理論을 定立하는 것이 優先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不正競爭防止法은 登錄되지 않은 工業所有權(商標, 意匠等)을 保護하고 있으므로 工業所有權 保護에 있어 登錄된 工業所有權을 保護하는 法(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商標法)과 二元體系를 形成하고 있다.

따라서 Know How도 次 차 企業의 財產의 價值의 比重이 增大되고 있으므로 이를 不正競爭防止法에 包含하여 保護하는 方法이 檢討되어야 한다.

〈遺傳子工學 技術〉

遺傳子工學과 關聯 特許法上의 問題는 有機體에 대한 特許性의 問題에 對한 論意가 있으나 大體로 이를 肯定的으로 認定하는 것이 世界的인 趨勢이다. 우리 特許法上 不特許事由와 關聯 檢討되어야 한다.

우리 特許法上 不特許事由

어떤 發明이 特許를 받기 爲해서는 新規性, 進歩性 및 產業上 利用可能性의 特許要件을 具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特許法上 不特許事由에 該當되지 않아야 한다.

이같은 不特許事由는 公益과 公序良俗에 違背되는 것을 規定하고 또 各國의 產業發展의 水準에 따라 經濟政策의 으로 規定하고 있다. 美國을 爲始한 先進國들은 公序良俗違背事項 및 核武器 등을 除外하고는 모든 發明을 特許對象으로 삼고 있는데 反하여 開途國에서는 經濟政策上 程度의 差는 있겠지만相當한範圍까지 不特許事由를 規定하고 있다.

우리나라 特許法 第4條는 다음에 該當되는 發明은 特許를 하지 않은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 ① 飲食物의 發明
- ② 醫藥 또는 2以上의 醫藥을 混合하여 1의 醫藥을 調製하는 方法의 發明
- ③ 化學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 ④ 原子核 變換方法에 의하여 製造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 ⑤ 化學物質의 用途에 관한 發明(1980. 12. 31本號改正)
- ⑥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素亂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害할 念慮가 있는 發明

植物의 境遇도一般的으로 特許가 可能하다(第3條 植物의 發明特許) 그러나 塊莖, 塊根, 球根에 對하여는 特許를 許容하지 않는다고 規定하고 있다.

動物에 對해서는 特別規定이 없다.

動物에 對해서는 自然의 產物인지 人間의 技術의 創作物인지 對해서 論爭의 餘地는 더 크다 그러나 오늘날 遺傳工學의 發展과 더불어 人間의 技術의 創作으로서 新로운 動物의 創製가 可能하다고 볼 때 一律의 으로 特許性을 否定할 것

이 아니라 特許法 4條 6項의 道德的 基準에 따라 具體적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遺傳工學技術에 대한 特許對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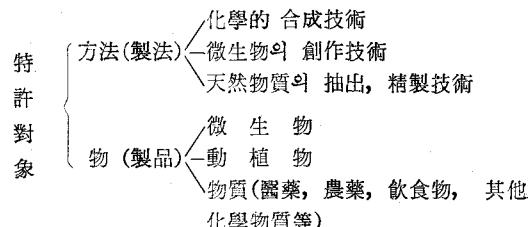
〈發明의 類型〉

遺傳工學技術의 發展에 따라 特許保護와 關聯 發明의 類型을 分類해 보면 製造方法과 製造物自體로 크게 兩分할 수 있으며 物自體는 問題點上 약간의 差異가 있으므로 微生物과 其他 物質自體로 區分하여 考察할 수 있으며 遺傳工學 關聯 技術中 植物과 動物은 高等生物로서 別途로 檢討하는 것이 便利하다. (表 3)

本稿에서는 便宜上 다음 6個項으로 나누어 檢討코자 한다.

- ① 微生物自體의 製造方法
- ② 微生物 自體
- ③ 微生物을 利用한 飲食物, 醫藥品, 農藥, 其他 化學物質의 製造方法
- ④ 飲食物, 醫藥, 農藥 또는 化學物質 自體
- ⑤ 植物 또는 動物의 創製方法
- ⑥ 動・植物 自體

〈表 3〉 特許對象의 分類



〈特許可能 與否〉

①, ③, ⑤番은 製造 및 創製方法에 關한 것으로 우리 特許法上 特許對象이 된은 論難의 餘地가 없다.

②番 微生物自體에 對해서는 自然의 摄理에 依한 產物로 特許性을 否定하는 見解도 있으나 오늘날 遺傳工學의 發展에 따라 人間의 技術의 創作物로 認定하는 것이 先進國의 趨勢이다.

法上 特別한 禁止規定이 없으므로 우리도 日本과 같이 審查基準의 制定에 依해 要件에 맞으면 特許가 法上 可能하다.

⑥번의 動・植物 自體에 對해서는 植物은 規定上 例外의 境遇以外는 原則으로 特許對象이 된다고 본다. 動物의 境遇는 倫理性이 問題가 되는 事案에 對해서는 關係規定에 依해 特許를

許容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動物이란 理由만으로 除外함은 遺傳工學技術을 度外視하는結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큰 問題가 되는 것은 ④番 飲食物, 醫藥, 農藥 또는 化學物質 自體로서 이들은 現行法上 名文으로 不特許事項으로規定하고 있다. 이들을 통일어서一般的으로 物質이라 稱하고 있으며, 이 物質을 特許保護할 수 있도록 法律을 改正할 것인가가 最近特許行政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課題이다.

物質特許問題

問題의 發端과 우리의 與件

〈問題의 發端〉

① 對內的으로는 國內의 技術開發의 促進에 따라 知的 所有權의 保護強化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다.

② 對外의으로 先進國 특히 美國의 二次產業의 競爭力喪失과 尖端技術의 發展에 따라 技術料收入에 對한 關心이 提高되고 있다.

美國에서는 知的 所有權 保護脆弱國에 대해 GSP等 貿易特惠減縮論이 擊頭하고 있다.

〈우리의 與件〉

우리의 技術水準이나 企業力은 新物質을 創製할 수 있는 能力에 到達하고 있지 못하고 單純한 模倣段階를 지나 製法改良段階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現段階에서 物質特許를 許容하는 法律을 改正한다 해도 우리 國民의 技術的創作을 保護하는 것이 아니고 先進國의 技術만 保護하게 되고 오히려 製法改良研究마저 길을 막게 된다는 것이 現在 物質特許를 해주지 않는 重要理由이다.

各國의 動向

83年 現在 世界의 獨立國家數는 195個國이며 그 中 特許制度를 保有하고 있는 나라는 171個國이 된다. 이 中 WIPO加盟國은 107個國이며 파리協約加入國은 94個國이다.

이 파리協約加入國은 現代의 特許制度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現代의 特許制度를 가지고 있는 나라中 아직도 相當數의 國家들이 物質特許를 許容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物質特許不許國은 漸次 줄어가고 있다.

'83年末 現在 파리協約加入國 中 化學物質에 대한 不特許國이 14, 醫藥에 대한 不特許國은

34, 飲食物에 대한 不特許國은 23個國으로 集計되고 있다. 〈表 4〉, 〈表 5〉

〈表 4〉 物質特許에 대한 世界各國의 現況

〈概要〉

全世界 獨立國家 195(資料: World Patent Law and Practice)

特許製度 171(")

WIPO加盟國 107(資料: WIPO)

Paris協約加盟國 94(")

〈Paris協約加盟國中 物質特許 不許國〉

區	分	'82	'83	增減
化 學 物 質		15	14	△ 1
醫 藥		48	34	△ 14
飲 食 物		24	23	△ 1

資料: 日本特許公報 '84

〈表 5〉 物質特許不許國名單

	Paris協約加盟國	化學物質	醫藥	飲食物
아시아 주	15	베트남, 한국 이란, 시리아, 터키, 레바논	베트남, 한국 이란, 시리아, 터키, 레바논	베트남, 한국
태양주	2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2
아프리카주	34		이집트, 가나, 튜니지아, 말리, 말라위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튜니지아, 말리, 말라위 리비아 4
유럽주	31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헬리시,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헬리시,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13
미주	12	멕시코, 우루과이, 브라질 3	멕시코, 알제리, 우루과이, 브라질 4	멕시코, 브라질 2
計	94	14	34	23

資料: 日本特許公報 '84

產業革命以來 지금껏 技術의 尖端을 擁고 있는 美國을 例外로 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逐漸曲折을 겪으면서 漸次的으로 物質에 대한 特許를 許與하고 있다.

○ 主要國의 物質特許 導入時期

1790 : 美 國, 1844 : 프랑스, 1949 : 英 國
1968 : 西 獨, 1776 : 日 本, 1978 : 스위스,
이태리, 베델란드

物質特許 許容時의 影響

物質은 國民生活과 直結되는 重要物資이다. 良質의 物資를 低廉한 價格으로 圓滑히 供給하는 것이 國民福祉를 增大하는 길이다.

現在 우리의 技術水準에 비추어 時期尚早란 意見이 많고 또 問題點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肯定的인 側面도 看過할 수 없다.

〈物質特許의 肯定的 面과 否定的인 面의 對比〉

肯 定 的 인 面	否 定 的 인 面
가. 精密化學分野의 先進 最新技術導入 促進 (特許權의 完全한 保護 와 傳播의 擴大)	가. 相當期間 先進外國技 術에 隸屬 (物質自體에 대한 特許 技術導入 不可避)
나. 高度技術 研究開發 基 盤構築의 基礎確立 (Process 開發→物質自 體開發로 轉換 不可避)	나. 國內代替技術開發 能力 不足
다. 不必要한 製法發明에 대한 競爭投資 止錫 (權利者의 防禦特許 및 非權利者의 迂迴特許)	나. 新物質 開發力 脆弱 (研究人力養成 및 R&D 投資能力 未洽)
라. 特許制度 本來의 目的 에 附合됨 (高度技術開發 促進)	다. 新 Process開發 減退 (製法開發 疏忽)
	라. 最新技術의 先進國 獨 占으로 實施料(Royalty) 上昇 및 業界負擔 加重

〈過度한 憂慮에 對해〉

物質 特許를 許容하는 境遇 지금껏 해오던 製造改良 開發은 中斷되고 特許된 物質은 獨占되어 價格은 上昇한다는 憂慮는 根據없는 것은 아 니나 現行制度의 正確한 理解 不足에서 오는 지 나친 憂慮도 있다.

① 우리나라가 物質特許를 許與할때까지 既開發되고 다른 나라에서 特許된 物質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永遠히 Process開發이 可能하다. Chemical abstracts에 收錄된 論文 約 1,000萬個以

上(1983. 12. 31 基準)

② 物質特許가 許與된 物質에 대해서도 同一 物質을 創製하는 new Process는 特許된다.

物質特許權者 ↔ 後 Process 特許權者

○ 相互 相對方의 特許利用 必要性(Cross-License)

○ 後 Process 特許權者는 物質特許權에 通常 實施權 請求

— 正當理由 없이 不應時 審判에 依한 強制 實施 許與 (特許法 第59條)

③ 特許權의 強制 實施 制度

— 國防 또는 公益上 必要時 制限 收用, 取消 또는 政府나 政府以外者의 實施 (特許法 第50條)

— 不實施時

國內에서相當한 營業的 規模로 3年以上 實施하지 않음 때 (特許法 第51條)

— 適當한 程度와 條件으로 國內 需要를 充足 시키지 못할 때 (特許法 第52條)

④ 醫藥品 등의 價格은 販足費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代替品의 開發로 獨占에 대한 對處가 어느정도 可能하다.

結語

우리의 技術水準의 急速한 發展 國際的인 趨勢에 따라 物質特許의 導入은 早晚間 이루어져 야 한다.

強力하고 効果的인 特許保護가 產業發展에 寄與하고 있음은 先進工業國의 經驗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現在의 우리의 技術水準에 비추어 당장에 導入하는 境遇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物質特許 問題는 特許政策의 問題만이 아니고 化學工業, 製藥工業, 農藥 및 食品工業의 開發에 따른 產業政策의 課題이며 또한 產業側面 뿐만 아니라 消費者 保護를 為始한 國民福祉側面을勘案한 國民經濟側面에서 綜合的으로 檢討되어 그 導入의 時期와 方法이 定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하여 業界는 不遠導入될 物質特許制度에 대한 對備策이 要望된다. <끝>

사 치 자 랑 외 제 자 랑

가 정 망 신 나 라 망 신